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증원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에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폐지하면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4명 중 2명(5급 1명, 7급 1명)은 감축하고, 2명(5급 1명, 6급 1명)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,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호, 2023. 5. 1. 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앞으로는 심사보호국 복지·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면서 복지·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하고, 분장사무 중 ‘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’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중복되어 ‘공공재정 부정청구등’으로 용어를 정비하며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(5급 1명, 6급 2명)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복지·보조금 부정 신고센터”를 “공공재정환수관리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“공익침해행위,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및”을 “공익침해행위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복지·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”을 “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1호)부터 제11호(종전의 제6호)까지 중 “부정청구등 및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”을 각각 “부정청구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7호(종전의 제12호) 중 “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”을 “공공재정 부정청구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8호(종전의 제14호) 중 “제4호부터 제11호”를 “제9호부터 제16호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
2.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 개발

및 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

3.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

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·관리·분석·통계에 관한 사항

4.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

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, 명단공

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

5.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·관리 및 운영 총괄

19.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업

무,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·처리에 관한 사항

제6장의 제목 “한시조직 및 한시정원”을 “한시정원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를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480”을 “48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72”를 “475”로 하

며, 검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통계사무관·부감사관

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식품위생사

무관·시설사무관·임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환경사

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155”를 “156”으로 하고, 행정주사·감사주사·검

찰주사·공업주사·관세주사·농업주사·마약수사주사·방송통신주사

·보건주사·보호주사·사회복지주사·세무주사·시설주사·식품위생

주사·임업주사·전산주사·출입국관리주사·통계주사·해양수산주사

또는 환경주사 “136”을 “138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483”을 “48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75”를 “478”로

하며, 검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통계사무관·부감사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시설사무관·임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155”를 “156”으로 하고, 행정주사·감사주사·검찰주사·공업주사·관세주사·농업주사·마약수사주사·방송통신주사·보건주사·보호주사·사회복지주사·세무주사·시설주사·식품위생주사·임업주사·전산주사·출입국관리주사·통계주사·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“136”을 “138”로 한다.

별표 5의2를 삭제한다.

총리령 제162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“2023년 6월 30일”을 “2025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의2(심사보호국) ① (생략)	제6조의2(심사보호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사보호국에 심사기획과, 부패심사과, <u>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</u> , 보호보상정책과, 신고자보호과, 신고자보상과 및 공익심사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공익심사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<u>공공재정환수관리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부패행위, 부정청탁, 금품 등 수수,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,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위반행위, 공공기관의 채용비리, <u>공익침해행위</u> , <u>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</u>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(이하 “부패행위 등”이라 한다) 신고 관련 통계의 관리·분석 및 활용	6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익침해행위</u> 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7. ~ 28. (생략)	7. ~ 28. (현행과 같음)

④ (생략)

⑤ 복지·보조금 부정 신고센터
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1.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-----
-----.

1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
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
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
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
항

2.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
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
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
립·조정

3.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
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업무
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
료의 수집·관리·분석·통계
에 관한 사항

4.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
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
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
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, 제
재부가금 부과, 명단공표 등의
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

5.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
구축·관리 및 운영 총괄

6. ----- 부정청구등 -----

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	----- ----- -----
2.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사·수사·감사 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	7. ----- 부정청구등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3.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	8. ----- 부정청구등 ----- ----- -----
4.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	9. ----- 부정청구등 ----- ----- ----- -----
5.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	10. ----- 부정청구등 ----- ----- ----- -----
6.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	11. ----- 부정청구등 ----- ----- ----- -----
7. ~ 11. (생략)	12. ~ 16. (현행 제7호부터 제1호까지와 같음)
12.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관	17.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----

련 정보의 종합·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·시행

13. 각종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료의 수집·평가 및 실태조사

14.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·탄원 등 민원 처리

15.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및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·처리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⑥ ~ ⑨ (생 략)

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

제14조의2(공공재정 환수제도과)

①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.

--

<삭 제>

18. 제9호부터 제16호-----

--

<삭 제>

19.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업무,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·처리에 관한 사항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6장 한시정원

<삭 제>

총리령 제1629호 국민권익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	총리령 제1629호 국민권익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(행정주사 2명)과 별표 3의2 의 정원 1명(행정사무관 1명)은 <u>2023년 6월 30일까지</u> 존속한다.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6월 30일</u> -----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.		.	.	
			<u>480</u>	<u>483</u>	+3
일반직 계	.		.	.	
	.		.	.	
	.		<u>472</u>	<u>475</u>	+3
	.		.	.	
	.		.	.	
검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사회 복지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부감 사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 송통신사무관 ·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		<u>155</u>	<u>156</u>	+1
	.		.	.	
	.		.	.	

행정주사 · 감사주사 · 검찰주사 · 공업주사 · 관세주사 · 농업주 사 · 마약주사주사 · 방송통신주 사 · 보건주사 · 보호주사 · 사회 복지주사 · 세무주사 · 시설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임업주사 · 전 산주사 · 출입국관리주사 · 통계 주사 ·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· ·	<u>136</u> · ·	<u>138</u> · ·	+2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•	•	•	•		
			<u>483</u>	<u>486</u>		+3	
일	반	•	•	•	•		
직	계	•	•	•	•		
			<u>475</u>	<u>478</u>		+3	
		•	•	•	•		
		•	•	•	•		
검	찰	사무관					
•	행	정사무관					
•	사	회					
•	복	지사무관					
•	통	계사무관					
•	부	감					
•	사	관					
•	공	업사무관					
•	농	업사무관					
•	해	양수산사무관					
•	보	건사무관					
•	식	품위생사무관					
•	시	설사무관					
•	임	업사무관					
•	전	산사무관					
•	방	송통신사무관					
•	환	경사무관					
또	는						
기	록	연구관					
		•	•	•	•		
		•	•	•	•		

행정주사 · 감사주사 · 검찰주사 · 공업주사 · 관세주사 · 농업주 사 · 마약주사주사 · 방송통신주 사 · 보건주사 · 보호주사 · 사회 복지주사 · 세무주사 · 시설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임업주사 · 전 산주사 · 출입국관리주사 · 통계 주사 ·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· ·	<u>136</u> · ·	<u>138</u> · ·	+2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